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13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유○○

피 고 ○○광역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2.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가산금 2,479,278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07,808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103,924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6. 9.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82,642,1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926,6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463,3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9.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85,121,438원, 지방교육세 7,134,488원, 농어촌특별세 3,567,244원(각 가산세 및 납기후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E, F, G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기 위해 ○○ ○구 H 임야 3722㎡, I 전 663㎡, J 답 1632㎡, K 답 1720㎡, L 전 1765㎡(총 면적 95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46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9.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B은 각 9502분의 1017.8지분의, 원고 C, D은 각 9502분의 1271.97지분의, E는 9502분의 2095지분의, F, G는 각 9502분의 1413.7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 A, B은 201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건축물명: M, '이 사건 제1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원고 C,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건축물명: N요양원, 이하 '이 사건 제



2시설'이라 하며, 이 사건 제1시설과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각 신청하였으며, 원고들은 2021. 1. 12.경 위 각 건축허가(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건축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고, 2021. 3. 24.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 6. 8. 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3. 6. 9. 원고들과 F, G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133,666,3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601,6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1,203,310원(가산세 포함), 합계 150,471,3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¹⁾, 그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비율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청구인	과세표준	부과 세액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A	371,579,478	20,676,350	18,367,170	1,539,450	769,720
B	371,579,478	20,676,350	18,367,170	1,539,450	769,720
C	464,372,125	25,839,740	22,953,910	1,923,890	961,940
D	464,372,125	25,839,740	22,953,910	1,923,890	961,940
합 계	1,671,903,206	93,032,180	82,642,160	6,926,680	3,463,320

라. F, G는 2023. 6. 26. 각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합계 28,719,5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A, B은 2023. 7. 6. 각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합계 21,291,910원(가산세 및 납기후 가산금 포함)을, 원고 C은 2023. 7. 7. 취득세, 농

1) E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관한 취득세 등을 미리 납부하였기에, 피고가 E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합계 26,619,670원(가산세 및 납기후 가산금 포함)을, 원고 D은 2023. 7. 6.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합계 26,619,680원(가산세 및 납기후 가산금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3. 8.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2.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4. 2. 27.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과세 금액에 납기후 가산금(취득세 가산금 2,479,278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07,808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103,924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이하 가산금 부분을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부칙(2020. 12. 29.) 제4조, 구 지방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 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개시된다. 따라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 가산금으로 이 사건 가산금 상당액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갑 제4호증의1 납세고지서), 그 가산금의 액수를 확정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는 등 징수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시설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완공하는 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으며, 철강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원고들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도 있었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



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후 신속하게 이 사건 시설의 착공에 들어가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2023. 6. 8.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178조 제1호²⁾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2)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1, 17 내지 21 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시설은 대지면적 2568.8㎡, 건축면적 494.95㎡, 연면적 2426.29㎡, 이 사건 제2시설은 대지면적 3023.1㎡, 건축면적 494.95㎡, 연면적 2426.29㎡이며, 각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있다. 2019. 4.경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게, 원고 A, B은 이 사건 제1시설의 신축공사를, 원고 C, D은 이 사건 제2시설의 신축공사를 각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상 이 사건 시설의 착공일은 2019. 9. 30., 준공일은 2020. 7. 30.(공사기간 약 10개월)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6.경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피고 측으로부터 대지면적 수정 보완,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시굴조사 실시 보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보완,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보완, 군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받았고, 2021. 1. 11. 위 각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다음날인 2021. 1. 12.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다) 이 사건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P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시설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O은 2021. 3.경 P마을 대표에게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P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2021. 3. 24. 착공에 들어갔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시설의 건



축공사과정에서 비탈면, 절개면에 옹벽 및 펜스가 설치되었고,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에워싸는 옹벽, 생태축조블럭 및 상단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다.

마) O은 2021. 8. 4. 원고 B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축자재비 상승분(최소 4억 8,000만 원) 및 토공사 추가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을 통보하였고, 원고 B은 2021. 8. 12. O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비 인상분이 487,557,400원이며 이를 준공 1개월 전까지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추가 건축공사비 지급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이 사건 시설은 착공 시점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2023. 6. 8. 준공되었다. 원고 C은 2023. 6. 29. 이 사건 제2시설에 N요양원이라는 명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원고 A은 2023. 10. 6. 이 사건 제1시설에 M요양원이라는 명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각 신고하였으며, 현재 원고 C, D은 N요양원을, 원고 A, B은 M요양원을 각 운영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법령상 제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거기에 다른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시설의 설치·운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노인복지법 제2조)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등에 비추어 충분한 공익성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전날인 2023. 6. 8. 이 사건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토지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실제 운영 중에 있고, 원고들이 그 취득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앞서 본 건축허가 내지 준공(사용승인) 지연으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없어졌거나 희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완연기 신청을 수차례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전', '임야' 등으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허가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의 내용 보완도 필요하였는바, 당초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쉽사리 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2020. 2. 24.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이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수차례 받았으나 매번 '재심의' 의견을 받았고 2020. 10. 29.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야 '조건부 수용' 결과



를 받았으며 2021. 1. 11. 그 보완조치를 완료하게 된 점, 원고 측은 2019. 9.경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신청하여 발굴허가를 득하고 2019. 12. 30.경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2020. 1. 20.경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보완을 하였던 점, 원고들은 2019. 11. 5. ○○광역시청에 군사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1. 20.에야 피고로부터 군 협의결과(조건부 동의) 및 보완사항을 통지받고 2020. 8.경 군 협의 관련 보완을 완료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완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연기 신청을 한 기간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 재협의를 거쳐 계속적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한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시설의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착공신고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제1, 2시설의 대지면적 합계는 약 5500㎡에 달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있는 '답', '임야'였기에 옹벽 및 펜스 등의 설치도 필요하여 토목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O은 원고들에게 공사비 인상통보문(갑 제21호증의1)을 보내어 추가적인 토공사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건축 과정에서 예상보다도 토목공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2021. 3.경부터 철근을 포함하여 건축자재비가 갑자기 상승하였고, 건축자재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시설의 공사진행이 일부 지연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고, 원고들로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와중에도 공사비 인상에 동의하는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이행하면서 공사를 최대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

판사 신○○

판사 임○○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구 지방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